

의안번호	제 199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07월 일 (제 302 회)

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1년 07월 01일

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

의안 번호	19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1. 07. 01.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제안이유

-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주요내용

□ 처분

(단위 : m², 천원)

기관명	구 분	사 업 명	수 량	금 액
괴 산 증 평 교육지원청	토 지	장연초 광진폐교 토지 처분	10,691.0	458,893
	건 물	장연초 광진폐교 건물 처분	1,050.3	294,233
합 계		(2건)	11,741.3	753,126

장연초등학교 광진폐교 처분

- 폐교일자 : 2005. 3. 1.
- 재산위치 :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814-1
- 재산현황
 - 토지 : 10,691m²(4필지)
 - 건물 : 본관교사 외 5동 / 1,050.3m²
- 추정금액 : 753,126천원
- 사 유 : 괴산군에서 동 폐교를 매입하여 방곡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에 따른 권역활성화센터로 활용하고자 함

제안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-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13조

붙임 : 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부.

2. 처분대상 재산 목록

(단위 : m², 천원)

재 산 의 표 시				추정금액 (천원)	처 분 시 기	처분 사유	매 도 요구자	비고
기관명	구분	소재지	수량(m ²)					
장 연 초 광진폐교	토지	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814-1	10,691.0	458,893	2011. 하반기	괴산군에서 방곡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위한 권역활성화센터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처분 (매각)	괴산군	도면1
	건물		1,050.3	294,233				
합 계 (2건)			11,741.3	753,126				

도면 1 : 장연초등학교 광진폐교 처분 위치도

건 명	구분	소재지	지번 (건물명)	지목	수량 (㎡)	추정금액 (천원)	처분사유		
장연초등학교 광진폐교 처분	토지	괴산군 장연면 광진리	814-1	학교용지	10,117	435,031	괴산군에서 방곡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위한 권역활성화센터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처분 (매각)		
			814-11	학교용지	275	11,825			
			813-3	대지	111	4,329			
			842-3	대지	188	7,708			
			소 계		10,691	458,893			
	건물		교사	철콘조	734.62	217,416			
			교사	시벽조	165	43,890			
			숙직실	시벽조	33	7,920			
			사택	시벽조	47.9	8,143			
			사택	시벽조	45.6	11,400			
			화장실	시벽조	24.18	5,464			
					소 계	1,050.3		294,233	
합 계				11,741.3	753,126				

